

## 폭염 · 이상수온 발생시 농어업피해지원 제도

농림수산식품부

■ 폭염 · 이상수온으로 농어업피해 발생시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라 재해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피해 지원 가능

○ 시 · 군 · 구 당 3억원이상 피해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

- 3억원 미만 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

○ 지원 내용

- 가축 : 입식비(마리당 돼지육성돈 139천원, 육계중추 740원, 오리중추 2,564원)

- 어패류 : 입식비(바지락 3,750천원/ha)

■ 또한, 농어업재해보험에 소 · 돼지 · 말 · 가금류에 대하여 폭염 특약을 가입한 농가(1,066건)는 보험에서 피해보장

■ 신고 및 지원 절차

〈농업재해대책법〉

○ 피해발생 → 피해신고(피해자 → 읍 · 면 · 동) → 피해복구계획수립(시 · 군 또는 시 · 도) → 3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보고(시 · 도 → 농식품부) →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→ 복구지원

〈농업재해보험법〉

○ 피해발생 → 피해신고(피해자 → 일선가입농협) → 피해여부 확인 및 손해평가(손해평가인) → 결과보고(지역농협 → 농협손해보험) → 보험금지급심사(농협손해보험) → 보험금 지급(농협손해보험 → 일선농협 → 피해 농어가)

■ 재해대책상황실 확대운영(축산팀, 양식팀 보강)

○ (사양관리) 가축 · 농작물 · 양식수산물 등 폭염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양관리 지도 · 홍보 실시(축산국, 어업자원관, 농촌진흥청)

○ 지속적인 피해현황 파악 및 필요시 신속지원 등

■ 문의 : (02)500-2078, 1603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, 재해보험팀 